

## 9조를 세계헌장으로 !

비전(非戰)과 비무장의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7 년3 월 15 일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은 달의 지평으로 지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달탐사기 “가쿠야かぐや”가 달의 둘레를 돌면서 찍은 것입니다. 우주의 작은 별에 지나지 않는 지구. 태양계 하나의 혹성.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위에 생존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들. 이렇게 생각은 우주로 나아가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인류의 미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떠올리며 헌법 9조를 지구시대와 우주시대에 걸맞은 것으로서

지구헌장과 세계헌장으로 격상시키는 운동이 요청되고 있다고 이 사진을 앞에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일본은 패전의 폐허 속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전쟁방기(戰爭放棄,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를 규정하는 9조를 지닌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전문에는

일본 국민은(중략)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중략)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리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중략)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헌법 제9조에는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46년 헌법 정부안이 발표된 뒤 제정에 관계한 두 사람의 연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하나는 당시 수상으로 9조의 발안자였던 시데하라 기쥬로의 전쟁조사회(3월 27일)에서의 서두 연설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현재 세계 각국 어느 헌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폭보다 더 강력한 파괴적 병기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군대를 가지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쟁 포기의 선언을 내걸고 국제 정치의 황량하고 막막한

광야를 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만, 세계는 조만간에 전쟁의 참화에 눈을 떠 결국 저희들과 같은 깃발을 들고 아득한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시대가 출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며칠 뒤 GHQ 총사령관 맥아더가 대일(對日)이사회에서 한 개회연설(4월 5일)입니다,

‘국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완전한 잘못이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한 국민 위에 선 일본 정부의 전쟁 포기’의 제안은 ‘전쟁을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사회, 정치 도덕의 한층 높은 차원의 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인류를 한발 더 전진시키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쟁 포기에 대한 일본의 제안을 전 세계 사람들이 깊이 고려할 것을 제창하고 싶습니다. 길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목표는 칭찬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목표도 일본이 이 헌법에 근거해 선언한 전쟁할 권리의 포기를 확실하게 모든 나라가 실시했을 때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전문은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평화산업을 일으켜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평화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헌법은 점령군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라며 계속 헌법 개헌론을 주장해왔고, 민주주의가 도를 넘었으니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미일안보조약과 미국 핵우산 하 9조의 범위 내에서 전수(專守)방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자위대를 확대해왔고, 무기 생산과 수출에도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작년(2016) 안보법제의 성립은 종래의 정부 견해마저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그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파는 종래의 해석 개헌의 현상 주인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조문 개정{혹은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9조를 둘러싼 헌법 상황은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반전과 평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연합헌장이 만들어지고 세계인권선언이 나와 UNESCO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제이해와 평화를 향해 크게 전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미소 대립을 축으로 두 세계의 긴장이 오래도록 계속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이어진 소련 체제의 붕괴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11,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전쟁, 중동 불안과 팩스 아메리카나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미중의 세력 다툼과 북한의 모험주의가 대두되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팽창하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쟁 후에 세계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AALA)의 비동맹과 중립 운동(예, 반동회의), 과학자들의 퍼그워쉬(Pugwash conferences) 회의가 있어왔습니다. 유엔에서도 군축회의가 마련되어 UNESCO도 군축교육회의, 국제평화의 해와 국제평화문화의 해를 제정하고 세비야선언(비폭력)을 비롯한 문화 다양성 선언을 거듭해왔습니다.

학습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조약,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선언, 나아가 환경 파괴에 저항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제적 운동도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를 환경 문제와 미래 세대의 권리라는 관점과 연결시켜 더욱 폭넓게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제3세계에서의 지역적 비군사 동맹과 연대의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어왔고, 비핵을 위한 국제회의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희구해온 새로운 질서 이념은 ‘평화와 공생’ (혹은 평화·인권·환경·공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관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사절!’이라는 감정이며, ‘전쟁은 악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전쟁은 빈곤·억압·폭력의 집약적 표현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침략전쟁과 패전 그리고 전문과 9조를 가지는

일본국 헌법 아래 70년 동안 외국 군대와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는 보기 드문 역사를 써왔습니다.

개헌과 재군비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저항하며 헌법을 지켜 뿌리내리게 하려는 운동도 이어져왔습니다. 원수폭 금지, 미일안보 반대, 베트남전쟁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그리고 ‘9조의 회’의 전국적 확대는 개헌 그 자체의 제기를 단념시켜 해석 개헌의 길을 어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평화시민회의와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해 9조세계회의를 주재하고 9조의 중요성을 호소해왔습니다. ‘9조의 회’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게 된 것과 유엔에서의 ‘평화로의 권리선언’ 움직임도 9조를 지키는 운동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9조는 평화를 희구하는 분별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인정받고 평가받아왔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역사가 토인비와 시카고대학 전 총장 허친스, 생화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센트 쥘리, 노벨평화상의 아리아스 산체스 전 코스타리카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9조를 알리는 모임’을 만든 찰스 오바비씨, 사상가 노암 촘스키, 영화 {일본국헌법}을 만든 존 존커맨 감독도 있습니다.

세계평화시민회의(헤이그, 1999)에서는 세계의 ‘각국의 의회는 일본국 헌법 9조와 같은 정부가 전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항목을 의제 제일로 내걸었습니다. 중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상사의 사람은 아랍권

사람들에게 친일 감정이 있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페샤와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무라 데츠씨가 국회에서 실감을 담아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9조는 ‘아시아 2천만의 희생자에 대한 국제공약이다.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목소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억지력(抑止力)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9조를 축으로 한 평화외교야말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9조가 환경과 공생 사상과도 친화적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평화사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9조는 일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것 없이 일국의 평화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 자각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입니다. 9조의 정신을 세계에 펼쳐가지 않는다면 그 평화주의는 완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그 9조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널리 호소해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기에.

그동안 하바마스 와 데리다가 평화에 관해 공동성명을 내고 칸트의 영구 평화론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바로 그 이념을 헌법 원칙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평화는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칸트)

이 칸트의 사상을 헌법으로까지 격상시킨 것이 바로 일본국 헌법의 전문과 9조가 아닐 런지요? 9조에는 세계 정치를 바꾸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의 결어대로 9조를 가지는 지구헌장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 런지요?

그를 위해

- 1) 우선은 일본에서 9조를 지켜 뿌리내리는 운동을 강화하고,
- 2) 그것을 지원해주는 국내외 분들의 서명과 메시지를 받아가며,
- 3) 이것을 나아가 지구시대에 걸맞은 ‘9조를 가지는 세계헌장(지구헌장)’으로 만드는 세계 협동작업의 시작으로 삼아가며,
- 4) 그 성과를 유엔에서의 결의로 살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 5) 앞으로 구상해갈 세계헌장은 세계 각국 국민과 정부가 국정과 외교 원칙에서 일본국 헌법의 비전과 비무장 정신을 받아들여 그것을 시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호소는 평화를 위한 지구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국의 개인 및 단체와 공유하여 그를 위한 활동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